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주택공간위원회 서 준 오 의원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서준오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,
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공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,
공개공지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을

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

○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

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

같은 대지에 포함된 경우에는,

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

공개공지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,

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